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353

발의연월일: 2024. 9. 26.

발 의 자: 강준현 • 민병덕 • 문진석

박홍배 • 김현정 • 서영석

안도걸 · 김병기 · 강훈식

이인영 • 박상혁 • 임광현

윤호중 • 이인선 • 정일영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10%, 채권으로 받는 경우는 15%,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,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%, 40%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러나 해당 감면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.

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%p씩 상향하며,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, 5개 과세기간별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77조 및 제133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6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, "100분의 10"을 "100분의 20"으로, "100분의 15"를 "100분의 25"로, "100분의 30"을 "100분의 40"으로,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50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100분의 30"을 "100분의 40"으로, "100분의 40"으로, "100분의 40"으로, "100분의 40"으로, "100분의 40"으로,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50"으로 한다.

제133조제1항제1호 중 "1억원"을 "2억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나 목 중 "2억원"을 "5억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7조(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	제77조(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
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다	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	
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	
인정고시일(사업인정고시일 전	
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)	
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	
득한 토지등을 <u>2026년 12월 31</u>	<u>2028년 12월 31</u>
<u>일</u>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	<u>일</u>
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	
득세의 <u>100분의 10</u> [토지등의	<u>100분의 20</u>
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	
서는 <u>100분의 15</u> 로 하되, 「공	<u>100분의 25</u>
공주택 특별법」 등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	
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	
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	
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	
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	
<u>100분의 30</u> (만기가 5년 이상인	<u>100분의 40</u>

경우에는 <u>100분의 40</u>)]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③ (생 략)
-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의 30(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)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(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)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.

⑤ ~ ⑨ (생 략)

제133조(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지 감면의 종합한도) ① 개인이 제33조, 제43조, 제66조부터 제 69조까지,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, 제70조, 제77조, 제7 7조의2, 제77조의3, 제85조의10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

<u>100</u>)
분의 50	
1. ~ 3. (현행과 같음)	
②・③ (현행과 같음)	
4	-
	-
<u>100</u> 분의	
<u>40</u>	-
<u>100</u> 분의 <u>50</u>	
	-
	-
· ⑤ ~ ⑨ (현행과 같음)	
세133조(양도소득세 및 증여세	1
감면의 종합한도) ①	-
日已一 6日已上/ ①	
	-
	-
	-
	-

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.

- 1. 제33조, 제43조,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,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, 제70조, 제77조의3, 제 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
- 2.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.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.

가. (생략)

나.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, 제69조의2

	·,
	· <u>.</u>
1.	
	<u>2</u> 억원
2.	
	가. (현행과 같음)
	나

부터 제69조의4까지, 제70	
조, 제77조 또는 제77조의2	
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	
득세액의 합계액이 <u>2억원</u>	
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	
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	
금액	

②・③ (생 략)

<u>5억원</u> -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